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62호 2016. 7. 8(금)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306호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307호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308호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309호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16
- 사천시 조례 제1310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사천시 조례 제1311호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 20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6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0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8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3)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게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4)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사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분권업무 실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5)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역량강화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7)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0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8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8)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발견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시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사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9)

1.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예방, 치료·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경찰서,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유형, 증감추이, 처리결과 및 대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단체,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의 신고의무자 및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10)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장 또는 관련 단체장이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11)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0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8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12)

3. “급식기관”이란 시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식장소”란 시장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13)

**제6조(급식비용 징수)**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동 자생사회단체,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14)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소방, 건물구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급식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그 밖에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되고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15)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16)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0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8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17)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또는 해당 도로소유자·도로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주차장 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관광장 :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18)

6. 그 밖에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19)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1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8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3퍼센트” 를 “2퍼센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2항 개정 이자율은 조례 시행 후 납부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20)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1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21)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물건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사천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행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 시장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사천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소유자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62호(22)

1. 사천시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조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장,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